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7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, 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 불능 사유
조0섭	1966. 3. 5.	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서로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	○ 국민취업제도 1유형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 지급액(500,000원) 반환 및 이후 기간 수급권 소멸 ○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 : 2021. 6. 7. ~ 2021. 6. 2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박영희(Tel. 032-540-582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